

# 크리스천교회(제자회) 도안 THE DESIGN

발행처

The Office of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총회장목사 사무소

**Revisio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개정판

**July 2017**

*THE DESIGN OF THE CHRISTIAN CHURCH (THE DISIPLES OF CHRIST)*

*크리스천교회(제자회) 도안*

**PREAMBLE 서문**

크리스천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가 세상의 주님과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과 섬김의 사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결속시키는 사랑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온 백성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친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합심합니다.  
주님의 성만찬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역사와  
그의 임재를 감사하며 경축합니다.  
만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의 은사와  
성경의 빛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주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영원하소서. 아멘.

1. 지상에있는 하나님의 온 가족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존재한다. 한 교회는 인류의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예배, 친교, 봉사를 위해 서로 함께한 질서 정연한 공동체로서 본 모습을 나타낸다; 사명, 증거 및 상호 책임을 위한 다양한 구조로서 나타낸다; 그리고 교회 회원들의 양육과 회복을 위해 나타낸다.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교회의 본질은 여전히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세대를 거쳐도 그 본질은 끊임없이 변치 않으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분별하여 인식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필요에 그 사명과 구조를 순응케 한다. 교회의 모든 통치권은 교회의 주님과 머리이신 예수님에 속하며,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권위 행사는 그분의 심판 아래 있다.

2. 그리스도의 보편적 몸 속에 있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증거, 전통, 이름, 제도 및 인간 관계에 의해서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의 언약으로 결합된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회중(개교회), 지방회 및 총회 사역에서의 언약적 관계로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 각각의 표현은 그 진실성, 자치, 권위, 권리 및 책임이 특징이지만, 언약적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결국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다. 우리는 서로 상호 책임을 진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3. 우리는 성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도안The Design을 채택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한다; 우리의 문 앞에서 부터 땅 끝까지 크리스천의 증거, 선교, 전도 및 봉사를 제공한다; 교회의 모든 표현이 성실한 크리스천의 청지기 직분으로 사역을 완수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증한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및 글로벌 관계에서 파트너로 활동한다.

4.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이 도안Design에 맞게, 교회 사역을 설립하고, 받아들이고, 양육한다; 지방회와 총회 사역 그리고 필요한 다른 기관을 부양한다; 전국 총회, 총이사회 및 총이사회의 행정위원회를 둔다; 사역의 규칙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정의한다; 선교와 증거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개발하거나 승인한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와 역사적으로 관련된 고등 교육 기관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 기존 기관이 본 계약의 조항 내에서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의 및 절차를 제공한다; 세상에서 섬기는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회복, 개혁 및 적응에 종사한다.

## **NAME 이름**

5. 이 단체의 이름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이다.

##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회원의 자격 및 가입**

6. 그리스도의 온 몸의 일원으로서, 크리스천교회(제자회)로 승인된 교회의 기존 회원이거나 되는 사람은 그 교회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위치한 그 근처의 지방회의 회원 자격을 갖는다.

7. 지방회 및 총회 사역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목적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 및 단체가 그 근처의 지방 및 총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승인 절차를 수립 할 수 있다.

### **CONGREGATIONAL MINISTRIES 개체 교회(회중) 사역**

8. 개 교회(회중)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의 첫번째 표현이다. 개 교회를 통해, 개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믿음으로 양육되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제자회에 합류된 교회는 그들의 지방회와 총회 사역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 좋은 소식을 그들의 현관 문에서 지구 끝까지 나누도록 한다.

### **RECOGNIZED CONGREGATIONS 승인된 개체 교회**

9.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최신 연감과 인명록 Year Book and Directory 에 기록된 모든 개 교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된 교회이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서 승인을 철회하기를 희망하는 개 교회와 승인을 희망하는 타 교회는 최신 연감과 인명록 일람표(주 참조)의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최신 연감과 인명록 Year Book and Directory을 출판 한 후에 기록 절차를 따르는 교회와 연감과 인명록 Year Book and Directory 사무소에 기록된 교회도 승인된 교회가 된다.

a. 승인을 요청하는 교회는 크리스천교회의 요구와 의도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여,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된 교회가 되고, 연감과 인명록에 등재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지방회 사무실에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받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요구와 의도를 담은 문서 사본을 제공한다. 이 문서는 교회의 설립허가서, 헌법, 정관, 또는 교회의 활동에 대한 공증된 진술서이다.

지방회장이 입증한 교회의 승인 및 등록 요청에 대한 지역 승인서는 연감과 인명록 제출을 위해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송부된다.

b. 교회가 등록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감과 인명부로 부터 제외될 수 있다:

i. 교회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된 교회로서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여, 총회장 목사 사무소가 그 지방회장이 인정한 교회 조치의 공증된 진술서를 받을 경우; 또는

ii. 5년 연속 기간 동안,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연감과 인명부에 보고된 교회 활동이 없었으며, 지방회장이 교회가 제자회선교기금 Disciples Mission Fund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방이나 지방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할 경우.

iii. 교회의 모든 표현에 상반되게 언약적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회의 행동이나 진술을 교회가 드러낼 경우, 지역회의 조치에 의해 연감과 인명부에서 교회가 누락될 수 있다. 지역회에서 위에 언급한 이유로 교회를 누락할 조치가 취해지면, 그 지역회는 공증된 서한을 통해 교회의 목록을

제거한다는 통지를 교회에 통보한다. 통보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교회가 목록으로부터 제거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철회는 최종 결정이 된다.

iv. 어떤 주체가 그 조치를 시작했는지에 관계없이, 철회가 최종으로 결정되기전까지는 그 교회와 그 지역회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가 있다. 철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그 지역회는 그 교회에 연감과 인명부에서 제거되었다고 통보한다. 교회는 이 도안Design의 17, 66 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치에 항소 할 수 있다.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권리와 책임**

10. 이 도안Design을 채택함에있어서,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단언한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일부로서, 교회는 교회의 증거와 봉사의 모든 사명을 창의적으로 공유한다. 똑같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총회 및 지방회 사역에서 그들의 복지와 필요에 대한 헌신을 통해 교회를 격려한다. 따라서, 각 표현의 성실성에 대한 관심은 공유되며, 교회 전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증거가 주어진다.

11. 개 교회가 승인되고 보호받는 권리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개 교회의 사역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개 교회의 이름, 단체 문서 및 사역의 조직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교회의 신앙 생활을 복음에 충실히 결단시킬 권리; 교회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간섭할 권리; 개 교회의 선교과 증거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할 권리; 예산 및 재정 정책을 수립할 권리; 개 교회의 사역자들을 청빙할 권리;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통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대한 공동 재판을 편성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12. 개 교회가 교회 전체의 선교와 증거에 대한 상호 관심을 나타내는 책임 가운데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와 성만찬을 시행하는 책임이있다; 회원 및 가족의 영적 양육을 제공하는 책임; 교회가 인종적 문화적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교제임을 이해함에 따라 성장하는 책임;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책임; 교역자들을 충실하고 명예롭게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지방 회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크리스천의 청지기에 충실하고,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체적 삶, 업무 및 증언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비례적으로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 전국 총회 및 지방 총회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한다; 새로운 교회의 설립과 양육에있어서 교회의 다른 사역과 함께 나눈다; 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현재의 새로운 에큐메니컬 조직과 함께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닫도록 노력한다.

13. 개 교회는 총회 및 지방회 사역을 필요로 하지만, 교회의 대표자가 전국 총회 및 지방 총회에 참여함으로써 확립 된 바와 같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회 및 지방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교회와 개인의 재정적 지원은 자발적이다.

## **REPRESENTATION IN REGIONAL AND GENERAL ASSEMBLIES 지방과 전국 총회에서의 대표**

14. 개 교회는 전국 총회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대표된다. 각 교회는 전국 총회에서 두 명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대표로 참석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참석위원이 100 명당 1명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추가로 더하거나, 100명 중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도 1명을 더 추가한다(major fraction thereof). 이러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은, 제 38c 항에 규정된 것처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교회의 안수받은 목사뿐 아니라 면허 받은 목회자도 된다.

15. 개 교회는, 사업 항목을 총회가 심의 할 수 있도록, 전국 총회 모임의 적어도 180일 전에, 총회장 목사 사무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 교회는 적어도 60 일 전에 전국 총회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사업 항목의 사본을 총회장 목사 사무소로 부터 받는다.

16. 개 교회는 각 지방의 공동 문서 및 조직의 규정에 따라 그 교회의 지방 총회에서 대표된다.

17. 개 교회 및 개별 위원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총회 및 지방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그들의 사역을 완수함에 있어서, 개 교회는 그러한 활동이나 직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사랑으로 표명하면서, 이러한 총회들의 활동, 결정 및 권고에 높은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되어진다. 전국 총회 또는 총이사회가 다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66 항에 규정된 대로 총회장 목사 사무소를 통해 행정위원회에 개 교회와 개별 위원들이 불만과 항의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 **REGIONAL MINISTRIES 지방회 사역**

18.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또한 지방회라고 부르는 지리적인 사역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 다음 원칙들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지방회 발전을 인도한다.

### **NATURE AND PURPOSE 본질과 목적**

19. 지방회의 주요 본질은 개 교회를 독특한 조직으로,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서로 관련된 교회 모임으로 양육하고 지원하고 참여시키려는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나온다. 지방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서로에게 그들의 상호 헌신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는 사역의 성격을 구체화해야 한다.

20.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지방회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이다.

- 1) 지방회의 주민들과 사회 구조 사이에서 선교, 가르침, 증거, 그리고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한다;
- 2) 지방회에 있는 개 교회를 설립하고, 받아들이고, 양육한다.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회원, 목사 및 교회에 도움, 권고 및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회 전체의 세계 선교와 증거에 그들을 연결시킨다.

##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회원 자격과 가입

21.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일원으로서,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된 개 교회의 회원이거나 되는 모든 사람은 그 개 교회가 있는 지방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 FUNCTION 기능

22.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지방회는, 설립된 영역 내에서, 선교와 양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관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23. **Mission**선교. 교회의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회는 그들에 관한 세계의 필요에 민감하여, 그러한 인간의 필요를 확인하고 섬김에 있어서 회원들을 인도한다. 지방회는 선교, 증거, 봉사의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개발하고, 교회의 모든 임무에서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데 주도권을 갖는다. 에큐메니컬 활동이 그들의 선교를 달성하는데 가능하다면, 지방회는 타 종교 단체의 유사한 지리적 단위와 결합해야 하고, 현재의 새로운 에큐메니컬 조과와 결합해야 한다.

24. **Nurture**양육. 지방회는 교회, 회원 및 목사의 삶의 지속적인 회복에 관심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있어서 리더십을 제공한다. 전국 총회가 개발한 정책 내에서, 각 지방회는 목회자의 직무 및 자격 부여, 목회자 추천과 청빙, 안수식, 면허, 목회적 관계의 설립과 해체, 목사 취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목사와 교회에 도움, 권고 및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지방회는 전임 목회 사역이 없는 교회를 위한 목회를 제공하고, 목사와 교회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과 도움을 제공한다.

25. 교회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지방회는 지역의 관심을 넘어, 교회에게 그들의 기회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촉구함으로써,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일치성을 입증한다. 또한 개 교회가 인종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 전체의 총체적인 사역에 연관되도록 도와 준다. 개 교회와 지방회 모두의 필요를 인식하기 위해 교회의 일반적인 표현을 부름으로써, 지방회는 일반적인 표현을 개 교회의 삶과 업무와 연관시키도록 도와 준다.

26. 지방회의 문서를 관리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이 도안Design과 조화를 이룬다. 업데이트된 사본은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 SHAPE AND BOUNDARIES 형태와 영역

27. 교회가 자체 지방회의 구조를 수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확인 가능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요인들을 통해서 제공된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회가 선교와 양육의 사역을 지방회적으로 수행한다;
- 2) 교회와 목사가 상호 지원과 격려에 대한 그들의 주요 관계를 찾는다;
- 3) 상호 관심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지방회의 친교, 예배 및 집회의 기회를 제공한다;

4) 교회의 세가지 표현 – 회중(개체교회), 지방회(지방교회) 및 총회(총체적교회) -을 교회 전체의 기능과 서로 연관시키기 위해 도움을 준다. 지방회는 크기와 모양이 다를 수 있다. 변화하는 선교의 임무와 인간 생활 조건에 부응하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지방회의 형태와 영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이 인식된다.

28. 총이사회는 도안 4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기존 지방회의 형태와 영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29. 새로운 지방회의 영역의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지방회의 기구는 총회를 통해 표현된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공동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역의 상호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회 영역을 재구성하는 과정(단 하나의 개 교회가 영향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은 행정위원회, 총이사회 및 전국총회의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승인을 필요로 한다.

## **STRUCTURE AND STAFF 구조와 직원**

30. 지방회는 그들의 사역과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특별한 구조와 조직을 개발한다. 지방회는 그들의 영역 내에서 지역 또는 지구 조직을 설립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지방회는 본 도안Design의 원칙에 따라, 자체 관리 문서를 확보하거나 보유하고, 그들의 계약관계의 선언을 공식화 한다. 전체적으로 교회의 다른 표현에 대한 복지를 존중하며, 지방회는 그들이 증거와 봉사의 총체적 선교를 창의적으로 공유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지방회는 사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예산을 결정하며 지방의 재정을 관리한다. 지방회는 집회를 통해서, 예배, 회원 교육, 친목 및 교회의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에 의한 사업 업무를 제공한다.

31. 지방회는 영적 및 행정적 지도자로서 지방회 회장을 지방의 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초빙한다. 각 지방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총회장 목사 사무소로 부터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지방회 회장을 지명하고 선출하기위한 명시된 절차를 개발한다. 지방회는 총이사회에 의해 수립한대로 현재의 제자회 인사 과정과 안전 장치Disciples search processes and safeguards를 사용하여, 모든 자격있는 목사들을 검토하도록 권장된다. 지방회는 선교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또한 온 교회의 헌신이 각 지방회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룬 반인종 차별주의 단체가 되도록,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 직원을 고용한다.

32. 지방회는 38 항에 규정된 대로, 전국 총회에서 대표된다. 지방회는 전국총회가 검토할 사업 항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회장 목사 사무소를 통해, 적어도 180일 이전에 전국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지방회는 적어도 총회 개회 60일 전에 총회가 검토해야 할 모든 사업 항목의 사본을 총회장 목사 사무소로 부터 받는다.

33. 지방회는 56b항에 규정된 대로, 총회에 회원을 선출할 책임이 있다; 각 지방회는 그 지방으로부터 총이사회 위원 한명을 선출한다. 또한, 지방회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ex officio 위원이 된다.

34. 제 79항에 규정된 대로, 총 지명 위원회General Nominating Committee를 선출 할 때, 지방회는 총 지명 위원회에서 가능한 위원 자격을 얻기 위해, 매 2년 마다 이름을 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5. 제 65 항에 규정된 대로, 여러 지방회, 지방회장 및 고등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절차는 행정위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평가된다.

36. 전국 총회 또는 총이사회가 다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66 항에 규정된 대로, 고충과 항의에 관한 문제는 총회장 목사 사무소와 행정위원회를 통해 지방회에서 회부 될 수 있다.

## THE GENERAL ASSEMBLY 전국 총회

37.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체적인 대표기구는 전국총회이다. 총회는 모든 예배, 심의 및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일체Wholeness와 일치Unity를 분명히 나타내도록 추구한다.

38. 총회에 등록된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의 모든 권리를 가지나 투표권은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

**a. 개 교회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Voting representatives from congregations.**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각 교회는 2 명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두며, 참여회원 100명당 또한 100명 중 과반수만 넘어도, 1명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major fraction thereof). 이 교회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사역의 규칙the Order of Ministry에 규정된 사람으로 추가된다

**b. 지역회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Voting representatives from regions.** 가장 최근의 연감 Yearbook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지방회는 처음 1,000명의 회원에 대해 최소 3 명의 투표 대의원을 둘 권리가 있다. 또한, 각 지방회는 1,000명의 참여 회원 또는 1000명 중의 과반수만 넘을 경우에도, 1명을 을 더 추가하여 지방회에 둘 수 있다( major fraction thereof). 이 지방회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사역의 규칙the Order of Ministry에 규정된 사람 외에 추가로 표결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은 여성과 남성,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 배경의 사람들, 18~30 세의 청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포함된다.

**c. Ministers목사.** 총 사목위원회 General Commission for Ministry를 통해 총회가 수립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있는 사역의 규칙 the Order of Ministry에 규정된 사람이다.

**d. 예외Exceptions.** 총회가 인정하는 고등 교육기관 및 총회 사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별도로 투표권이 없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회원; 별도로 투표권이 없는 총이사회 위원; 별도로 투표권이 없는 전직 총회 회장 및 부회장

39. 전국 총회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총회가 시작될 때부터 다음 총회가 시작될 때까지 봉사한다. 어느 누구도 총회에서 한 번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결석이나 대리투표할 수 없다. 개 교회 및 지방회는 참석할 수 없는 38 (a) 및 39 (b) 항에 규정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대체하기 위해 번갈아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40.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에큐메니컬 또는 역사적으로 관련된 교회 회원들은, 의장의 초청을 받아,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참여권을 가질 수 있다.

41. 전국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예배, 회원 교육, 사업업무를 위한 집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제안된 정책 및 프로그램, 보고서 및 결의안, 그리고 아래 규정된 대로 정당하게 언급된 기타 사업 항목을 수락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임원을 선출한다; 책임있는 총이사회 위원을 선출한다; 지방회, 총회 행정사역 및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한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재정 지원 절차를 제공하고 승인한다; 인종적 정의 및 포용에 대한 교회의 업무에 대한 책임있는 장소가 된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와 다른 종교 단체, 조직체 및 기관의 협력 관계의 기초를 결정한다; 다른 기독교 공동체와의 일치와 연합의 대화, 협의 및 협상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와 미국간의 적절한 국가적인 에큐메니컬 관계를 유지한다. 개 교회와 전 캐나다 위원회를 통해 총회와 관련이있는 캐나다의 크리스천교회 (제자회)는 캐나다 내의 국가 기구에 관한 에큐메니컬과 기독교 일치에 관한 문제에 책임을 지며, 모든 캐나다 및 세계 에큐메니컬 단체와 관련하여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42. 전국 총회 정기 회의는 총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매 2년마다 열린다. 총이사회는 그러한 권고를 하기위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총이사회는 총회 특별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43. 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과 자문 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 and Counsel 같은 위원회를 둔다. 또 총회 및 총회 프로그램 기간중에는 사업위원회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준비위원회 역할도 수행한다. 선거 절차가 도안The Design 또는 특별 총회 규정에 의해 더 이상 정의되지 않은 위원회 멤버십은 행정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총이사회에 보고된다.

44.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 총회가 고려해야 할 모든 사업 항목은 총이사회에 의해서 수령되거나, 총이사회에서 비롯된다. 사업 항목은 개 교회, 지방회, 고등 교육 기관, 총회 사역, 또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일반적인 표현과 인정된 관계를 가진 조직에 의해 총이사회에 제출 되거나, 그러한 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제출될 수 있다. 그러한 사업 항목은 총이사회가 적절한 권고를 검토하고 참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총회 회의 180일 전에 총회장 목사 사무소를 통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의 모든 항목은 총회 회의 60일 전에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의해 개 교회, 지방회 및 총회 행정부처에 회람된다.

45. 사업 항목은, 그내용이 전국 총회의 180일 전에 정기적으로 제출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긴급 항목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한 사업 항목은 5개 이상의 교회로 부터, 10인 이상의 총회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제출할 때,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제출될 수 있다. 총회장 목사는 그 항목이 추천 및 자문위원회에 도착함을 보고, 그 항목이 긴급상황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다면 그 처분에 관해 총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46. 전국 총회의 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총회의 각 사업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투표 회원이다.

####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 임원**

47.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두 종류의 임원을 가진다: 총회의 무급여 임원과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급여 일반 임원이다.

**48. 총회 무급여 임원 Non-salaried officers of the General Assembly.** 총회의 무급여 임원은 총회의장, 선출된 총회의장, 제1총회부의장, 제2총회부의장, 총회가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임원이다. 이 임원은 총지명위원회 General Nominating Committee가 지명하고,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 a. 총회 의장은 전국총회, 총이사회, 행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들 기관에 의해 부여된 기타 책임을 진다.
- b. 총회 부회장은 총회, 총이사회 및 행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을 보조하며, 이들 기관에 의해 부여된 기타 책임을 진다.
- c. 선출된 총회 의장은 2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2년 동안 총회 의장으로서 봉사한다. 선출된 총회의장은 총이사회 또는 행정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기타 책임을 진다.
- d. 총회의장, 부의장 및 총회의장 당선자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정규회원이 되며,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소속된 여성, 남성, 평신도 지도자와 목사를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 이 임원은 자신들이 선출된 총회의 정기 모임 폐회시 취임하고, 차기 정기 총회 때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고 임명 될 때까지 재직한다.
- e. 의회위원 Parliamentarian은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 의장에 의해 임명된다. 의회위원은 전국총회, 총이사회 및 행정위원회의 업무 회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회 문제에 관해 조언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절차는 로버트 질서규정, 개정판 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에 의거한다.

**49.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급여 임원 Salaried officers.**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급여 임원은 총회장 목사, 비서총무, 재무담당자, 총회가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임원이다. 비서총무 및 재무담당자는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서 지명된다. 비서총무는 전국총회, 총이사회 및 행정위원회의 절차 기록을 보관한다. 법률에 의해 요구 될 수 있는 법인 비서총무 Corporation Secretary로서 봉사한다. 이 직책에 배정될 수 있는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재무담당자는 법인 재무 임원 Corporation Financial Officer이 되며, 이 직책에 배정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한다. 비서총무 및 재무담당자는 2년의 기간으로 총회장 목사의 지명에 따라 행정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재선출 될 수 있다.

50. 총회장 목사 The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목사이자 조직의 회장으로 승인된다.

51.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목회자로서, 총회장 목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a. 모든 다양한 표출에 있어서 교회에 영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고, 위기상황에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목회적 권위를 행사한다.
- b. 도안 The Design의 정신을 구현한다.
- c. 도안 The Design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해석한다.
- d. 크리스천교회(제자회)를 위하여 첫번째 에큐메니컬 대표자로 봉사한다.
- e.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지속적인 분별력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f. 교회의 모든 표현 가운데 상호 책임에 대한 감독을 한다.

- g. 지방회, 전국, 개 교회의 사역 모임에서 회원 각자가 평등하게 책임을 지는 합의제의 지도력으로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
- h. 커미션, 위원회 및 총이사회와 지방회 기관의 업무반에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 i.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전체 생활에 대한 대화와 성찰을 위해 다양한 교회 성직자, 지방회 사역자, 교육 사역자 및 일반 교회 실행위원과 목사와 회합한다.

52.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최고 실행임원chief executive officer으로서, 총회장 목사의 회장직의 역할presidential roles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 적절한 경우, 총회 행정사역부의 이사회, 인증 사역부서 또한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지역회에 대한 충분한 접촉을 한다.
- b.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재정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을 진다.
- c.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모든 기능을 감독한다.
- d.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첫번째의 대변인으로 봉사한다.
- e.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공식 문서에 서명한다.
- f.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대한 공동 거주자 대리인corporate Resident Agent으로서 봉사한다.
- g. 적절한 경우, 대표의 자격으로서 봉사하도록 총회장 목사 사무소 실행위원 직원을 임명한다.

53. 총회장 목사의 자격과 책임Qualifications and accountability은 다음과 같다:

- a. 총회장 목사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소속된 안수받은 목사이다.
- b. 총회장 목사는 총이사회를 통해 행정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6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되어 이 사역에 부름 받는다. 그리고 한번 더 추가로 선출 될 수 있다.
- c. 총회장 목사는 행정위원회, 총이사회 및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d. 총회장 목사는 행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 투표로 퇴출될 수 있다.
- e. 총회장 목사의 지명 및 선출에는, 행정위원회, 총이사회 및 총회에 각각의 투표 출석자의 3분의 2의 표결이 필요하다. 총회장 목사의 직위가 공석인 경우, 행정위원회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다음 총회 때까지 공석을 채우도록 한다.

## THE GENERAL BOARD 총이사회

54. 전국 총회는 총회에 책임이있는 소규모 심의 기관을 설립하여 총이사회라고한다. 총회가 결정한 광범위한 정책에 따라, 총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 a. 제 41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의 사항을 적절히 권고하고 총회를 접수, 검토 및 조회한다.
- b. 크리스천교회(제자회)가 모든 업무와 증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 c.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재정 목표를 수령하고 검토하고 승인한다.

- d. 인정된 사명에 따라,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총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 e. 조치를 취하기 위해, 총회에 권고안과 함께 맡겨진 제안된 정책을 수립하고 개시한다.
- f. 지속적인 갱신과 구조 개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 g. 검토 및 평가중인 사항을 고려하여 직원과 상담하고 협의한다.
- h. 책임이있는 총회 행정부서의 관리기관을 선출하거나 확인한다.
- i. 총회의 위원회를 선출한다.
- j. 총회에 의해서 배정될 수 있는 기타 책임을 추정하고, 해임 할 수 있다.

55. 전국총회 회의 사이에, 총이사회는 총회의 설립된 정책에 따라 크리스천교회(제자회)를 대신하여 잠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검토에 대한 모든 문제를 차기 총회에 위임한다.

56. 총이사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선출된 위원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에 소속된 평신도 여자회원, 평신도 남자회원 및 목사를 포함하며, 그 중 1/2이하 또는 1/3이상이 목사가 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 a. 총지명위원회는 전체 교회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명한다. 총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17명의 회원을 선출하고, 이 중 적어도 두 명은 선거 당시에 18~23세 사이의 나이여야 한다.
- b. 각 지역회의 이사회는 총이사회에서 봉사할 회원 중 한 명을 선출한다.
- c. 각 총회 행정사역부의 이사회는 총이사회에서 봉사할 회원 한 명을 선출한다.
- d. 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 아시아 태평양계 제자회 총회, 아프리카계 제자회 총회의 이사회들은 총이사회에서 봉사할 회원중 한 명을 각각 선출한다.

다음은 당연직 ex officio 회원이다: 총회 의장; 총회장 목사; 서로 다른 북미 종교단체의 두명의 에큐메니컬 회원; 전 총회장 목사; 다음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ex officio 회원이다: 비서총무, 재무담당자, 의회위원, 각 총회 행정사역부서의 최고 행정임원; 각 지역회장; 교양교육 liberal arts education 및 신학교육의 대표자로서 고등 교육국에 의해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의 두명의 최고 행정 임원.

57. 총이사회의 기간은 총회가 끝날 때 시작되고 끝난다. 2 번의 연임으로 계속 봉사한 총이사회의 선출된 위원은 한번의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재선될 자격이 없다.

58. 총이사회의 정기회의는 일반적으로 총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단, 총회가 소집될 연도의 회의는 총회의 정기 회의가 시작하기 90일 이전, 60일 이내로 개최된다. 총이사회의 투표 회원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된다. 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해, 전체 총이사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의 다수결의 투표로 취소 될 수 있으며, 우편 투표, 온라인 양식 또는 기타 적절한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회신이 확인 될 수 있다. 총회 의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총이사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9. 총이사회는 총이사회 업무의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임명한다. 총이사회 위원회(General Board committees)를 사용할 경우, 총이사회 전체 업무를 강화하고 총회와 그 선거구 간의 상호 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a. 총이사회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심의를 위한 정책의 대안과 영향을 준비함으로써 총이사회를 지원한다.
- b. 총이사회 위원회는 특정 및 시간 제한적 목적을 위해, 공식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이사회에 발언하거나 행동 할 수 없다.
- c. 총이사회는 도안(The Design)에 지정된 대로 업무를 지도하고 통제하는 상설 규칙을 유지한다.

###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GENERAL BOARD 총이사회 행정위원회**

60. 총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총이사회 행정위원회가 있다. 이 행정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된다; 총이사회 투표권 위원 9명; 당연직(ex-officio) 위원 5명(총회장 목사, 총회의장, 선출된 총회의장, 총회의 2명의 부의장);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 7명(비서총무, 재무담당, 총회의 의회위원, 총회 행정사역 협의회(Council of General Ministries) 대표 2명, 지방회장 협회(Council of General Ministries) 대표 2명)

61. 행정위원회 위원은 선거 직후 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시작하여 2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행정위원회에 한번 연속 임기로 선출 될 수 있지만, 총이사회에서 위원의 서비스를 넘어서 연장될 수는 없다. 두번 연속으로 봉사한 행정위원회의 위원은 한번의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재선 될 수 없다.

62. 행정위원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총이사회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총회장 목사 사무소를 위한 이사회 관리자로 봉사하며, 총회장 목사에게 제기된 불만을 처리하고, 총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와 책임을 맡아서 수행한다. 총회의 임원은 총회장 목사와 협의하여 총회가 없는 해에 한 번의 행정위원회 회의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취소의 특별 사유는 행정위원회 위원에게 통보되며, 행정위원회의 만장일치 찬성 투표는 인디애나 법률에 따라 우편 투표, 온라인 양식 또는 기타 검증 가능한 의사 전달 수단을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행정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과 위원회와 태스크 포스로 봉사하기 위해, 총이사회 추가 위원을 요청할 수 있다.

63. 행정위원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업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총이사회 검토와 평가를 위한 모든 결과 제안을 진행시키고, 총회가 처리하도록 한다. 행정위원회는 여러 총회 행정사역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하여, 그러한 조치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정책에 잘 맞도록 확인한다.

64. 행정위원회는 총회에 의해 선출된 임원으로 공석을 보충하고, 차기 정기 회의에서 총회의 비준을 받는다. 행정위원회는 총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생활, 사명, 업무 및 조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용한 권고 사항을 제출한다.

65. 행정위원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여러 지방회, 총회 사역부서 및 고등 교육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 및 홍보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행정위원회는 전국총회, 개 교회, 지방회

사역, 총회 사역을 대신하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501 (c) (3) 세금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크리스천교회(제자회)를 대신하여 행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조직이 해산되면, 자산은 국세청 코드 501 (c) (3) 항의 의미 내에서, 하나 이상의 면제 목적으로 분류된다.

66. 행정위원회는 총회 및 총이사회 회의를 위하여 사업 의제를 준비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총회 또는 총이사회가 다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소 및 이의 제기 사항은 개별 위원, 목사, 개교회, 지방회 또는총회 사역에 의해 행정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위해 회부 될 수 있다.

67. 행정위원회의 투표 회원의 3 분의 2가 정족수이다.

### **GENERAL MINISTRIES 총회 행정사역<sup>ii</sup>**

68. 총회는 총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 분야, 중앙 행정 기능,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총회 행정사역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여, 세상에 대한 증거와 봉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책임을 다하도록 봉사한다. 교회의 사명을 위한 교회의 삶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 행정사역이 창안되는 것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필수 요건이다.

69. 아프리카계 제자회 총회, 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 및 아시아 태평양계 제자회 총회는 교회 내에서의 다양성을 증거한다. 크리스천교회 내에서의 독특한 역사적 관계와 그들이 공유하는 풍성한 문화적 선물을 가진 사역은 미국과 캐나다 제자회의 교회적 필요 안에서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관해 말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들의 특정 사역의 발전으로 위탁된다.

70. 총이사회는 각 총회 행정사역의 목적과 기능을 승인하고 각 통치기관의 위원을 선출하거나 확정한다. 총회 행정사역의 통치기관의 위원에 대한 책임, 선택 방식 및 재임기간은 그 목적과 기능을 참조하여 결정되며, 조례나 절차 규칙에 명시되어야 하며,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정리 보관된다.

71. 각 총회 행정사역은 총이사회가 수립되듯이, 현재의 제자 인사 과정Disciples search processes을 사용하여 임원과 직원을 선출한다. 각 이사회는 총이사회와 합의하거나, 제 52항에 언급한 대로, 총회장 목사와 협의한 후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새로운 최고 행정 임원Chief Administrative Officer에 대한 조항을 조례나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된다. 그리고 총이사회의 행정위원회의 자문과 조언을 얻는다. 선거가 끝나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은 적절한 행동으로 총이사회의 새로운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수여된다.

72. 총회를 통해 크리스천교회(제자회)가 수립한 규정에 따라, 총회 행정사역을 통합하고 프로그램과 재정을 관리하고, 조례나 절차 규정을 제정하거나 유지한다.

73. 각 총회 행정사역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하며, 총이사회의 계획과 조치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그 업무를 평가하고, 총회에 그것을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추천한다. 총회 행정사역은 행정위원회에 중간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여 여러 총회 행정사역부서의 활동을 촉진하고 조율하는 책임을 수행하여, 그러한 행동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정책에 맞음을 보장한다.

## **RECOGNIZED MINISTRY PARTNERS 승인된 사역 파트너**

74. 행정위원회는 사역과 목회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전반적인 사명을 지지하는 목회 동역자와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를 중앙위원회에 추천 할 수 있다. 총회장 목사 사무소와 목회 동역자의 후원자가 통합됨으로서, 총회는 새로 승인된 사역 파트너를 적합하게 환영축하한다.

75. 그러한 승인을 원하는 사역은 적절한 총회 행정사역을 통해 그러한 관계를 요청한다. 각 총회 행정사역부는 사역 파트너를 행정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하지만 총회 행정사역부의 통치기관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

76. 행정위원회는 사역 파트너가, 후원 총회 행정사역sponsoring General Ministry의 과정을 넘어서, 승인을 받기 위해 평가되는 기준을 유지한다.

77. 그러한 조직의 계획과 활동은 후원 총회 행정사역을 통해 총이사회에 보고 된다. 그러한 보고서의 검토와 총이사회의 조치는 총이사회 보고서에 포함되어 총이사회에 제출된다. 세번 연속적인 이사회 회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사역 파트너는 승인된 사역 파트너로서의 지위에서 제외된다.

78. 사역 동역자를 위한 연락 정보는 연감과 인명록 Year Book and Directory의 후원 사역에 등재된다.

## **CONTINUAL RENEWAL AND STRUCTURAL REFORM 지속적인 갱신 및 구조 개혁**

79. 총이사회는 인종 및 민족 특유의 교회 및 성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한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갱신 및 구조 개혁 절차를 유지한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총회 행정사역에 직원, 예산 및 기능을 재 할당할 수 있다. 모든 단위간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새로운 총회 행정사역의 발전에서도,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총회를 통해 표현된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공동 판단에 비추어, 관련된 조직의 상호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신탁기금 및 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및 계약 관계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제공된다.

## **NOMINATIONS AND ELECTIONS 추천 및 선거**

80. 총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추천위원회 General Nominating Committee가 있다. 총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인종 및 민족성에 의해 널리 분포되며, 한 명 이상의 회원이 아프리카계 제자회 총회, 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 아시아 태평양계 제자회와 전국총회 및 총이사회가 추천하고 전국 총회가 승인할 수 있는 기타 사역으로부터의 대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지역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그들의 선거 당시 위원의 절반은 총이사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절반 이상 또는 1/3 이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매 2년마다 행정위원회는 총추천위원회에서 4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거하도록 5명을 추천한다. 총추천위원회 위원은 단 한 번의 임기만 봉사 할 수 있습니다.



81. 총지명위원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도처에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안된 후보추천자와 그들의 자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직책 후보자를 선출 할 때, 추천위원회는 제한없이 제안된 모든 이름을 고려한다.

82. 총추천위원회는 총회에 의해 선출될 다음의 각 직책에 대해 1명의 추천자를 선출한다. 총회의장, 총회 제1부의장, 총회 제2부의장, 선출된 총회의장 및 선거가 총회에 의해 부여되는 총이사회 위원 (제 41 항에 규정)

83. 총추천위원회 보고서는 총회 개최 60일 이전에 개 교회와 지방회로 보내 진다. 총회 위원으로부터 추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다. 승인을 위해 단순 다수simple majority가 필요하다.

84. 또한, 총추천위원회는 제 41항에 규정된 대로, 선거 또는 확인이 총 이사회에 부여된 직위에 대한 추천자를 총이사회에 제출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총회 행정사역부의 통치기관 위원, 행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와 커미션 위원이 포함된다. 서비스 조건 및 지위 (선출직, 당연직,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등)에 유의한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회장 목사 사무소는 총추천위원회에 직원과 지문을 제공한다.

## **MINISTRY 목회 사역**

85. 교회 내의 기본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그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86. 교회 세례를 통해,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 사역에 들어간다. 공동 사역에서, 각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부름을 성취하여, 사역자로서 세상에 보내진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이 사역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87. 또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아래 놓여있는 사역의 명령을 인정한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는, 총회를 통해, 총회가 개발한 정책 내에서 목회의 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과 기준을 승인한다. 지방회는 목사직을 입증하고, 목사와 교회에 도움, 조언 및 목회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

88. 장로와 집사elder and deacon의 직분offices은 그 직분에 적합한 사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의식과 함께 선거와 승인을 통해 교회에 의해 임명을 받는다.

a. 선출된 장로는 지정된 기간 동안, 선출된 교회에서 사역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침례와 성만찬의 사역과 예배의 인도를 나누고, 목회적 돌봄과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나누는 일이다. 장로는 자발적인 사역이며, 각 교회는 여러 장로가 있다.

b.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세례와 성만찬, 성찬 예식, 목회적 돌봄 및 영적인 인도를 돕는 일에서 보조를 받음으로써 지정된 기간 동안 자신을 선출하는 집회에서 봉사할 권한이 있다. 집사직은 자발적인 사역이다.

## REVISION AND AMENDMENTS 개정 및 수정(안)

89. 이 도안Design의 개정 및 수정(안)은 총회의 투표 회원의 3분의 2의 표결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안)은 총회 회의 180일 전에 정기적으로 제출되며, 총회 개최 60일 전에 교회와 지역으로 배포된다.

### ASCRPTION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Ephesians 3:20-21

#### i. 연감 및 인명부 등록 절차 Procedures for Year Book and Directory Listing:

- a. 승인을 구하는 교회는 자신의 소망과 의도를 표현한 교회의 행위를 승인받아,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받은 교회가 되어, 연감 및 인명부에 등재된다.
- b. 교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받은 교회가 되도록 자신의 소망과 의도의 진솔이 담긴 문서 사본을 그 지역회 사무소에 제공한다. (이 문서는 교회의 헌장, 헌법, 정관 또는 교회의 활동에 대한 공증 성명서 일 수 있다.)
- c. 지역회장이 증명한 평가와 기록에 대한 교회 요청의 지역 보증은 연감과 인명부에 파일하도록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보내진다.
- d. 일단 교회가 등재된 후에, 교회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승인된 교회로서, 철회할 조치를 취한 경우, 연감과 인명록에서 생략될 수 있으며, 총회장 목사 사무소는 지방회장이 인증한, 그 조치의 교회로 부터의 공증된 성명서를 받는다.

#### ii. 현재 승인된 총회 행정사역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국 Christian Board of Publication
- 재단관리국 Christian Church Foundation
- 교회확장국, 재무 및 선교 자원 Church Extension Financial & Missional Resources, Inc.
- 교회 일치국 Council on Christian Unity
- 제자회 역사 보존국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 국내선교국 Disciples Home Missions
- 해외 선교국 Division of Overseas Ministries
- 고등 교육국 Higher Education and Leadership Ministries
- 자선국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 연금국 Pension Fund